

	교직원공적심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2. 4. 16.
		최종개정일자	2022. 4. 1.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설치) 이 규정은 교직원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된다. <2022.04.01.>

제3조(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제상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위원회는 총장의 공적심사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,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 . 의결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5조(기능)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

①공적의 내용이 포상목적 및 방침과 부합되는지의 여부

②공적내용이 질적,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.

③포상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.

④기타 사항(기 포상여부, 근무연수, 근무부서, 직무분야 등)

제5조의2(심사기준) 대학 내부 시상 대상자와 외부 서훈대상자 추천의 자격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조신설 2020.1.31>

1. 교원의 교육경력 및 직원의 재직 경력

2. 교직원의 국가 정책 기여도(각종 정책연구 및 심의, 자문위원 활동 포함)

3. 교직원의 대학 발전 기여도

4. 교원의 학과 발전 기여도

5. 교직원의 사회봉사 참여도

6. 직원의 각 행정부서 업무 기여도

7. 교직원의 학생지도 참여도

8. 기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제척) 위원은 자신의 공적을 심사하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장이 위촉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한다.

제8조(공적조서의 작성) 공적조서는 본 대학 포상규정 (별지서식1, 2)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